

#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령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 목 차 ■

1. 머리말
2. 원산지결정 원칙
3. 보충적 원산지 결정방법
4. 원산지기준 적용절차
5. 맺는말

김 석 오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문관)

## 1. 머리말

한·칠 FTA에서는 원산지가 칠레 또는 우리나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즉, 원산지의 인정범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의 적용과 우회수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과세요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FTA의 실질적 수혜여부가 원산지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원산지규정은 기업의 해외투자·생산방식·수출계획 등 경영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FTA의 확산, 세계화의 심화 및 다국적 생산활동의 보편화 현상과 연계되어 원산지규정은 글로벌 기업활동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칠 FTA에서는 원산지규정이 양국의 교

역·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양국간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규정<sup>1)</sup>을 도입하였다. 동 협정의 원산지규정은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과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 대부분 수용되어 '04. 4. 1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하에서는 특례법과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수입자·수출자 등 무역업계와 동 규정의 해석·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종사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2. 원산지결정 원칙

한·칠레 양국간 교역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확인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1)한·칠 FTA 제4장 원산지 규정 및 동 협정 제4장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

변형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완전생산기준은 주로 국내에서 재배·수확·채굴한 농수산물이나 광산물 등 1차 산품이나 국내산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에 적용되며, 실질적변형기준은 수입 재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생산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다. 특례법상의 원산지결정의 기본적인 틀은 WTO원산지협정 또는 교토협약상의 원산지규정에 따르고 있다.

### 가.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완전히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특례법 제8조제1항제1호)이다.

칠레 또는 우리나라(이하 "역내"라 한다)에서 채굴한 광산물, 재배·수확한 농산물, 수렵 또는 어로에 의하여 획득한 물품이 그 주요대상이다. 현재 우리기업들이 칠레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동과·동광·철강·아연광·포도·원목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소·말·돼지·닭 등 산 동물의 경우에는 역내에서 태어나 성장한 것만 해당된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한 송아지를 칠레에서 일정기간 사육하여 국내로 수입한 경우 당해 수입 소의 원산지는 칠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역외에서 수입한 씨앗(seed)·인경(bulb)·근경(rootstock)·삽수(挿樹)·접수(接樹) 또는 기타 산 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작물은 원산지가 인정된다(별표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주 1).

칠레 또는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역내 영해밖의 바다에서 채포한 수산물과 선박에서 동 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물품(예: 칠레에서 수입되는 물품중 어육 등 수산가공

품)도 완전생산물품에 해당된다. '선박'이라 함은 칠레 또는 우리나라에 등록되고,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외에 영해밖의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채굴한 원유·광산물 등 해저자원이나 기타 물품의 경우에도 역내 국가가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역내에서 행하여진 생산과정에서 발행한 폐기물(waste) 및 부스러기(scrap)와 역내에서 수집되어 사용이 끝난 물품중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예: 칠레에서 수입되는 물품중 동설)도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것을 원료로 하여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한 물품도 완전생산물품에 해당된다(예:칠레에서 수입되는 물품중 칠레산 포도주·펠프 등) (규칙 제5조제1항).

### 나. 실질적변형기준

실질적변형기준은 상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실질적인 제조 또는 가공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수입재료를 국산재료와 혼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칠레로 수출되는 자동차·휴대폰·가전기기·직물제품 등 대부분의 공산품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례법에서는 실질적변형기준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주요공정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특례법 제8조제1항제2호).

먼저, 세번변경기준은 HS 코드를 기초로 당해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수입재료의 세번과 최종제품의 세번이 일정수준 이상 달라진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HS코드가 일

반적으로 물품의 원재료·중간재·완제품 등 제조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어 투입된 수입재료와 생산제품의 세번이 변경되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단위세번의 수준은 각 물품별로 HS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등 다양하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2단위가 가장 엄격한 기준이며, 4단위 또는 6단위로 갈수록 원산지를 인정하는 폭이 확대된다. 한·칠 FTA에서는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위하여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엄격한 2단위 세번변경이 도입되었는데 반하여, 공산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4단위 또는 6단위의 세번변경이 많이 도입되었다.

부가가치기준은 수입재료를 투입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부가가치기준 사용시 원산지를 인정하는 역내 부가가치비율은 혼합주스 등 2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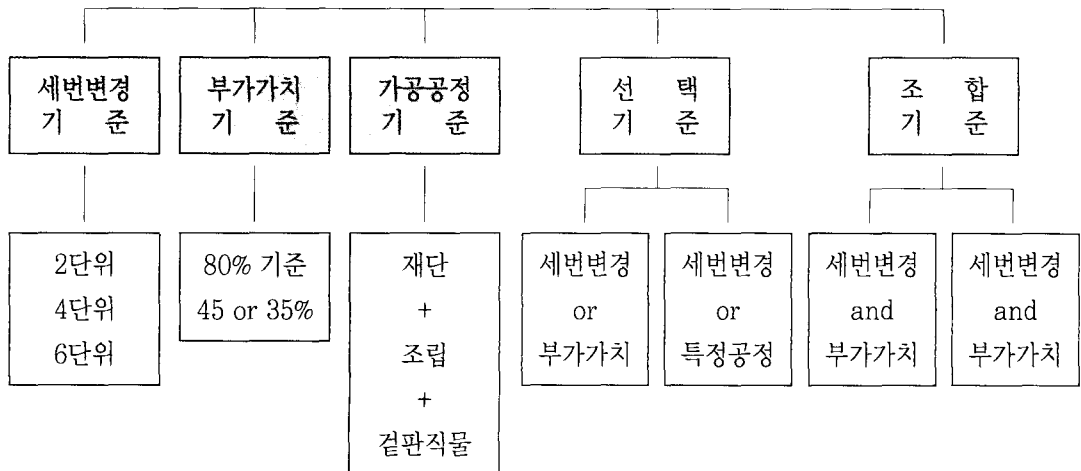
(공제법)으로 산출할 경우 45% 이상, 원산지재료를 기준(직접법)으로 산출할 경우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공정기준은 당해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주요공정(예: 섬유제품의 경우 재단·봉제 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원산지 인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동 기준은 주로 섬유제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과 혼합하여 적용된다.

규칙 별표에서는 위 3가지 기준을 기초로 HS 1류 내지 97류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확인기준을 도입하였다. 각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품목별 특성, 교역구조,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단위, 4단위, 6단위 등의 세번변경기준을 기초로 하면서, 부가가치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선택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었다(〈그림 1〉 참조). 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주요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예시하면 〈표 1〉과 같다.

〈그림 1〉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표 1〉 품목별원산지확인기준(예시)

품 명	HS번호	원산지결정 기준	적 용 사 례
쌀	1006	2단위	당해국에서 수확한 것만 인정
쌀가루	1102	2단위+부가가치	미국산 쌀(HS1006)로 국내에서 생산한 쌀가루(HS1102)는 원산지불인정→'분쇄' 작업은 원산지 불인정공정에 해당
미숫가루	1901	4단위+부가가치	중국산 콩(HS1201)으로 국내에서 가공한 미숫가루(HS901)의 경우 45%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인정
국수·라면	1902	4단위+부가가치	당해국에서 수확한 것만 인정
참깨	1207	2단위	중국산 참깨(HS1207)로 국내에서 가공한
참기름	1515	2단위+부가가치	참기름(HS1515)의 경우 45%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인정
김치	2005.90	4단위+부가가치	중국산 배추(HS0704)로 국내에서 만든 김치(HS2005)의 경우 45%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인정
된장	2103.90	4단위	중국산 콩으로 국내에서 가공한 된장은 원산지 인정
인삼차	2106.90	4단위	중국산 인삼(1211)으로 국내에서 가공한 인삼차는 원산지 인정
소주	2208.90	4단위+부가가치	주정(2207)→소주 : 45% 부가가치 발생한 경우 원산지 인정
가죽핸드백	4202.21	2단위	호주산 소가죽(4101)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핸드백은 원산지 인정
청바지	6203.42	2단위+재단·봉제	국산 원단으로 국내에서 재단·봉제한 것만 원산지 인정
신발	6401.10	4단위+or부가가치	신발갑피(6406)→신발 : 원산지 인정
냉장고	8418.10	6단위	냉장고부품(8418.99)→냉장고 : 원산지 인정
휴대폰	8525.20	4단위+부가가치	
칼라TV	8529.90	4단위	수입한 TV부품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TV는 원산지 인정
승용차	8703.22	부가가치	국내에서 공제법 기준으로 45%의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원산지 인정

**다. 부가가치산출방법**

부가가치기준 적용에 필요한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공제법 또는 직접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산출한다. 공제법은 수입재료, 직접법은 국산재료를 변수로 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국산재료의 사용비중이

높은 수출업체는 직접법, 국산재료 보다 국내 인건비 및 가공비의 비율이 높은 수출업체는 공제법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두가지 방법 중 무역업자의 편의에 따라 유리한 것을 사용하면 된다.

조정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거

### 〈공제법〉

$$\text{역내부가가치비율} = \frac{\text{당해물품의 조정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가격}}{\text{당해물품의 조정가격}} \times 100$$

### 〈직접법〉

$$\text{역내부가가치비율} = \frac{\text{원산지 재료가격}}{\text{당해물품의 조정가격}} \times 100$$

래가격에서 수입항까지 운임·보험 기타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FOB 가격)을 말한다(규칙 제2조제7호).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재료를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재료의 조정가격이 기준이 된다. 비원산지재료를 국내에서 로컬로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재료의 실제 구입가격을 기초로 한다. 비원산지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경우이거나 자가생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료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일반경비 및 이윤을 합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규칙 제9조제1항). 비원산지재료가격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규칙 제9조제2항).

- 생산자의 생산장소까지 운송에 따른 운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 당해 재료와 관련하여 지불된 수입제세 및 통관비용(감면·환급·징수유예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수입제세는 제외)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비용중 재활용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즉 수입후 국내에서 국산부품을 사용

하여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을 구입한 경우 당해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국산부품비용은 공제대상이 된다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규칙 제9조제3항). 다만, 비원산지재료에서는 공제항목인 운송관련비용·수입제세·폐기물비용이 원산지재료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규칙 제9조제4항).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중에서 생산자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자가생산한 중간재가 있는 경우 그 중간재는 원산지재료에 포함한다(규칙 제8조제2항). 따라서 중간재 생산에 소요된 재료를 수입재료와 국산재료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 없이 원산지재료에 포함하여 간편하게 계산하면 된다. 이 경우 중간재가 원산지인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한편, 당해 물품의 생산에 직접 체화되지 않더라도 당해 물품의 생산·시험·검사에 사용되거나 당해 물품의 생산과 관련되는 건물의 유지 또는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간접재료도 원산지재료에 포함된다. 이는 원산지 인정범위를 가급적 넓게 인정하여 교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간접재료비용의 배분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면 될 것이

다.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재료는 다음과 같다(규칙 제8조제3항)

- 연료 및 에너지
- 공구·금형 및 다이스(Dies)
-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그리스(Greases)·혼합물 및 그 밖에 필요한 재료
-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촉매제 및 용해제
- 그 밖에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이 입증되는 모든 물품

### 3. 보충적 원산지 결정방법

특례법에서는 획일적인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번변경기준의 특례, 원산지인정 최소기준(De Minimis), 累積基準(Accumulation),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기준, 원산지불인정공정 등 여러 가지 보충기준이 도입되었다.

#### 가. 세번변경기준의 특례

규칙 별표에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규칙 제7조). 이 경우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 기준

으로 45% 이상, 직접법 기준으로 30%이어야 한다. 이는 HS 품목분류 구조상의 특성으로 인해 세번변경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이다.

- 당해 물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관세법 별표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 당해 물품과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동일한 호(4단위) 또는 소호(6단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컨대, Knock-down 방식으로 컴퓨터제품(HS 8471)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할 경우 수입품과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하게 분류된다. 이 경우 세번변경(4단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제법 기준 45% 이상 또는 직접법 기준 3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HS 8471호에 분류되는 컴퓨터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같은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사운드카드를 생산할 경우 세번변경(4단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외적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를 인정받게 된다.

#### 나. 원산지인정 최소기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당해 물품 조정가격의 100분의 8 이하인 경우에는 규칙 별표에서 정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을 예외적으로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다만, 품목번호 제1류 내지 제24류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의 생

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당해 물품과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규칙 제6조제1항). 즉,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수입재료와 최종제품의 HS 6단위가 달라야 동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품목번호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섬유제품중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fibre) 또는 사(yarn)의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중량의 100분의 8 이하인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본다(규칙 제6조제2항).

최소기준은 수입재료의 비율이 극히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획일적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따르는 모순과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이다. 농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국내 농어민 보호와 우회수입방지를 위하여 최소기준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섬유제품의 경우 세번이 원단 또는 직물에 함유된 섬유나 실의 함량에 의해 결정되는 특징을 고려하여 중량을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 섬유제품은 가격등락이 매우 심하여 가격기준으로 최소기준을 설정할 경우 원산지결정이 혼란스러운 점도 고려대상이 되었다.

#### 다. 누적기준

누적기준은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상대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이 칠레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원산지를 칠레로 하고,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본다(특례법 제8조제3항). 역내에서 다수의 생산에 의해 여러 제조단계를 거칠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국내 최종단계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한다<sup>2)</sup>.

동 기준은 FTA로 인한 시장통합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역내간 교역·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 라.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대체가능물품'이라 함은 상관행상 서로 호환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특성·기능·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예컨대, 곡물·과일·볼트·너트·베어링·타이어 등이 이러한 물품에 해당할 것이다.

대체가능한 국산품과 수입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혼용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비원산지재료와 원산지재료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규칙에서는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평균법 등 4가지의 재고물품관리법을 사용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10조제1항).

개별법은 당해 생산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

2)협정 제4.5조 참조

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타이어의 경우 타이어에 표시된 브랜드나 제품고유표식에 의하여 국산 또는 수입여부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 등을 기준으로 당해 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즉, 수입재료가 먼저 입고되었다

면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비원산지재료로 본다.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 등을 기준으로 당해 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즉, 국산재료가 가장 최근에 입고되었다면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는 원산지재료로 본다.

평균법은 당해 생산물품의 생산당시 보관중인 원산지재료 및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을

### 〈적용사례〉

1. 대체가능재료인 국산재료 X와 수입재료 X는 최종제품 A의 생산에 사용된다.
2. 재료 X의 한 단위는 최종제품 A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3. 재료 X는 최종제품 A의 생산에만 사용된다.
4. 최종제품 A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다른 재료는 모두 국산이다.
5. 최종제품 A의 생산자는 제품 A의 모든 선적분을 칠레로 수출한다.

### 〈원재료재고대장〉

원재료 재고(재료 X의 입고)					판매(A의 선적)
일 자	구 분	수 량	단가(\$)	총가격(\$)	수 량
5/18	국산	100	1.00	100	
5/27	수입	100	1.10	110	
6/1	기초재고	200			
6/1	국산	1,000	1.10	1,000	
6/5	수입	1,000	1.10	1,100	
6/10	출고				100
6/10	수입	1,000	1.05	1,050	
6/15	출고				700
6/16	수입	2,000	1.10	2,200	
6/20	출고				1,000
6/23	출고				900



계산하여 그 취득가격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당해 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취득가격의 계산은 보관중인 재료의 취득가격의 총합계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위 4가지 재고물품관리법중 어느 한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중에는 동일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규칙 제10조제2항).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선입선출법의 적용사례를 예시하여 설명한다.

### 〈원산지결정〉

최종제품 A는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이라고 가정한다. 역내부가가치 산출은 공제법을 적용한다. 재고관리기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 (1) 5.18에 원재료에 입고되었던 100개의 국산재료 X는 6.10 선적된 100개의 최종제품 A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A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0가 된다.
- (2) 5.27에 원재료에 입고되었던 100개의 수입재료 X와 6.1에 입고된 1000개의 국산재료중 600개가 6.15에 선적된 700개의 A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A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110(100개 \$1.10)으로 간주된다.
- (3) 6.1에 원재료에 입고되었던 1000개의 국산재료 X중에서 나머지 400개와 6.5에 원재료에 입고되었던 1000개의 수입재료 X중 600개가 6.20에 선적된 1000개의 A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A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은 \$660(600개 \$1.10)으로 간주된다.

- (4) 6.5에 원재료에 입고되었던 1000개의 수입재료 X중에서 나머지 400개와 6.10에 원재료에 입고되었던 1000개의 국산재료 X 중 500개가 6.23 선적된 900개의 A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A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440(400개 \$1.10)으로 간주한다.

### 마. 부속품 등의 원산지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한다. 예컨대, 진공청소기에 딸려서 판매되는 집진봉지는 당해 진공청소기의 원산지에 따른다. 즉, 진공청소기가 원산지물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집진봉지가 비록 수입물품일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다. 이 경우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등은 본 제품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규칙 제11조제1항). 따라서 부속품 등을 별도로 수입하거나 통상 인정되는 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및 포장용구(예: 포장지, 병, 캔 등)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에 따른다. 다만,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관세법시행규칙 제75조). 계속반복 사용이 가능한 가스통·컨테이너·기타 특수제작한 금속용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부속품 등의 본체 또는 포장용품의 내용물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인 때에는

달리 적용된다. 즉, 본체 또는 내용물품의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속품 또는 포장용품을 각각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에 포함시켜 계산한다(규칙 제11조제2항). 예컨대, 승용차의 경우 45%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데, 승용차의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역내부가가치 비율산정시 수입한 예비타이어의 가격은 자동차의 비원산지재료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바. 역외국에서 환적된 물품

규칙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인정요건 등 원산지물품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생산된 이후에 역외국에서 추가 생산과정을 거쳐서 수입된 경우에는 원산지가 불인정된다(규칙 제12조제1호). 예컨대, 아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중국 현지공장에서 마무리 작업하거나 추가 가공하여 칠레로 수출하는 경우 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된다.

이와 달리 역외국에서 수입할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규칙 제12조제2호). 이 경우 당해 물품이 역외국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었음을 수입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역외국의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경우에는 역외국에서 추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외국 세관의 통제를 벗어난 물품에 해당되므로 원산지가 불인정된다.

#### 사. 원산지불인정 작업 또는 공정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운송·보관·포장·선별 등을 위한

경미한 작업 또는 공정활동만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예컨대, 중국산 멸치(HS0301)를 한국에서 건조하여 마른 멸치(HS0305)를 만드는 것은 세번변경이 발생하나, 건조작업은 원산지불인정공정에 해당하므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산 쌀(HS1006)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쌀가루(HS1102)도 원산지가 불인정된다. 세번변경은 발생하지만 쌀가루를 만들기 위한 '분쇄' 작업은 원산지 불인정공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경미한 가공작업만으로 세번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인정공정기준이 없을 경우 우회수입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동 기준은 우회수입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원산지 불인정 작업 또는 공정은 다음과 같다(규칙 제13조제2항).

- 환풍·통풍·건조·냉장·냉동
- 세탁·세척·거르기·진동·분류·등급화·혼합·절단(cutting) 등
- 탈피·탈각 또는 박편(unflaking)·뼈제거·분쇄·압착 또는 연질화 등
- 염장(salifying) 또는 가당(sweetening)
-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과의 희석
- 상품의 단순조립·세트구성·분해
- 동물의 도축

## 4. 원산지기준 적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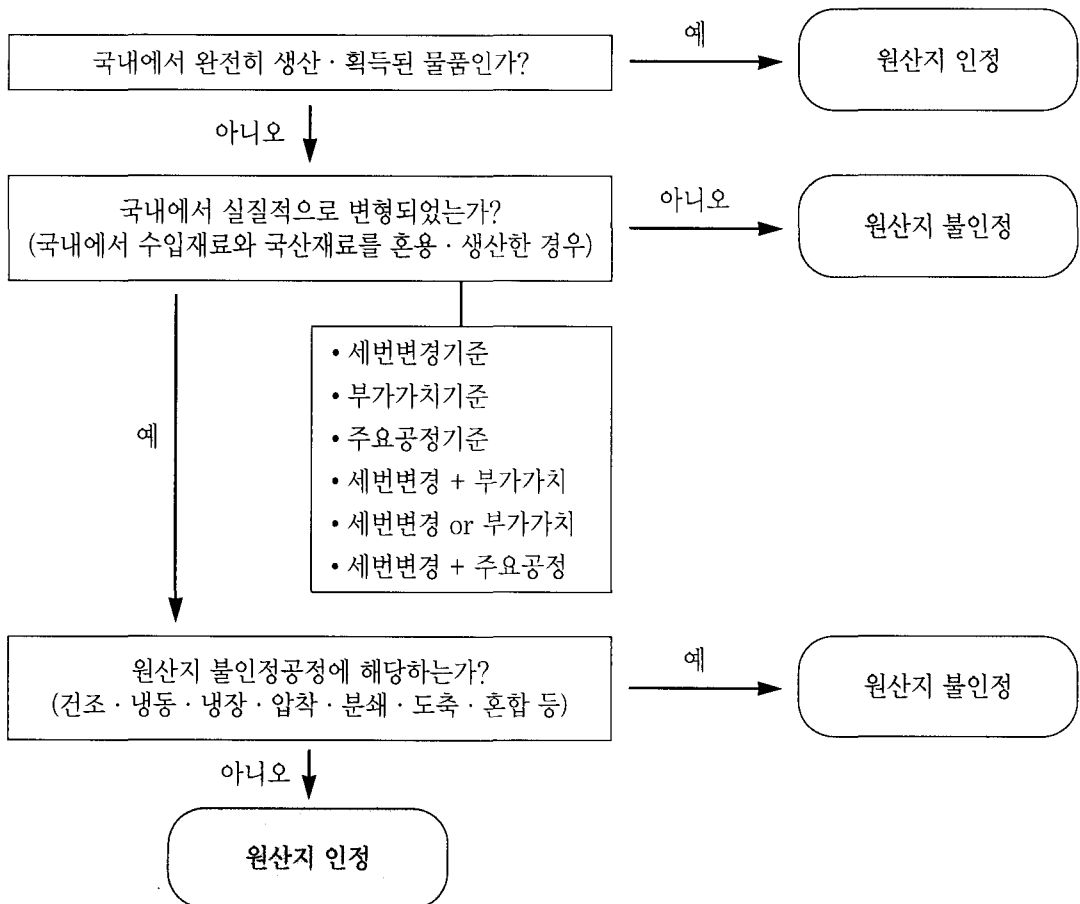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산재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완전히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재배·수확한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 외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의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의 적용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 규칙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수입재료별로 HS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HS번호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여기서 단 한 종류의 수입재료의 세번과 최종제품의 세번이 동일할 경우에는 원산지가 불인정 된다. 이 경우 보충적 기준으로 최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수입재료의 가격비율이 최종제품 조정가격의 100분의 8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산지가 인정된다. 또한 품목분류 원칙상 수입재료와 최종제품이 동일한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되거나 수입재료가 최종제품의 주요특성

### 〈그림 2〉 원산지기준 적용절차



을 갖추고 있어 최종제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법 기준 45% 또는 직접법 기준 3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원산지를 인정받는다.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를 비원산지재료와 원산지재료로 구분하여 각 재료별 실제 구입한 가격을 기초로 공제법 또는 직접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된다. 직접법을 사용하여 역내부가가치를 산출할 경우 간접재료(예:연료·에너지·다이소·촉매 등) 비용도 원산지재료의 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접재료의 단위당 소요량 계산이 정형화되지 않아 실제 적용상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면 될 것이다.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등 실질적 변형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경미한 가공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이거나 역외국에서 운송 도중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은 원산지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의 절차를 도해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 5. 맺는말

규칙에서는 기존의 관세법상의 원산지규정과 달리 한·칠 양국간 교역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양자간 통일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각 산업별 특성이나 양국간 교역구조를 고려하여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수입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적절히 조합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정확한 원산지판정을 위하여는 품목분류와 관세평가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수입재료의 품목분류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역내부가가치산출의 기초가 되는 조정가격이나 재료가격은 관세평가방법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간접재료비의 배분이나 자가생산물품의 제조원가 산정 등은 회계적 실무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이에 따라서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FTA 체제하에서는 원산지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칠 FTA에서는 원산지자율증명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칠레로 물품을 수출하려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경우 자신들이 생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례법에서는 원산지허위증명자에 대하여 2000만원이하의 벌금부과(특례법 제19조제1항제3호)와 아울러 과실로 원산지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교부한 자에 대하여도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특례법 제19조제3항제2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또한 세관당국에서도 우회수입의 방지와 원산지조작을 통한 관세탈루를 막기 위하여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며, 원산지의 적정여부에 대한 사후심사기법을 새로이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위주의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FTA 체제하에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참고서류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가 원산지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서류는 아니므로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 및 원재료가격자료 등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우회수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FTA, 한·싱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총수입물품의 4분의 1 이

상이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와 세관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병행하여 미국·캐나다·칠레 등 FTA 다수 체결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세관의 원산지검증 업무체계와 절차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본다.

無風月花柳，不成造化。無情欲嗜好，不成心體。只以我轉物，不以物役我，  
則嗜慾莫非天機，塵情卽是理境矣。

바람과 달과 꽃과 버들이 없으면 천지의 조화도 이루어지지 못하며, 정욕과 기호가 없으면 마음의 본체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다만 나로써 사물을 부리고 사물로써 나를 부리지만 앓은다면, 기호와 정욕도 하늘의 작용이 아닌 것이 없고, 세속적인 마음도 곧 진리의 경계이니라.

- 채근담 -